

접 수	의안과 - (2015. . .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1부
- 2. 청 원 서 1부. 끝.

2016년 1월 28일

청 원 인

성 명 : 신 영 주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소 개 의 원 :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성명 : 신 영 주
건명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소개년월일	2016년 1월 28일
<p>소개의견</p> <p>청원인 신영주 외 21명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정치법제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 제 18회 임시회의에서 저희가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범죄의 수준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공소시효 기간 만료 후 증거가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 대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그 불안감을 더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의 기술력은 증거와 정보가 오랫동안 보존되더라도 훼손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증거의 훼손이라는 이유로도 공소시효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살인에 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 가운데 같은 반인륜적 범죄인 성범죄 또한 공소시효가 폐지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정치법제위원회 입법청원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p> <p>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p> <p>①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소 개 의 원

인

# 청원서

## 1. 제안이유

공소시효는 피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윤리성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공소시효는 법의 엄정함이 도리어 피해자에게 향하도록 하는 악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성범죄율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성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비율도 심각한 속도로 증가하는 중입니다. 전자발찌와 같은 수단의 보편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엄격한 조치나 제재를 취하지는 않기 때문에 가시적인 범죄율의 감소는 없습니다. 시민들의 경우 반인륜적 범죄 중 하나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하고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인과 성범죄는 같은 반인륜적 범죄이고, 살인의 공소시효가 최근 폐지되었기 때문에 성범죄도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할 이유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여론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므로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자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공소시효의 기한을 늘리거나 아예 공소를 폐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학기술과 수사기법의 발전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 증거의 유지가 가능하므로 이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증거의 정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는 공소시효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 2. 주요골자

현행 법 상으로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경우 20년, 증거가 부족할 경우 10년의 공소시효를 둡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 2항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공소시효의 기한을 두기 때문에 이 법안을 수정하도록 합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을 모두 공개하고,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범인의 체포를 돕도록 합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더라도 성범죄자가 체포되었을 경우 그 죄를 엄중히 심판하여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죄값을 치르도록 합니다.

현행	개정문
<p>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p> <p>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lt;개정 2013.4.5.&gt;</p> <p>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p> <p>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를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p>	<p>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p> <p>①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2,3,4항 전문 삭제)</p>

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별첨 2】

##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

---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 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

1.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서 각각 3부씩(이중 2부는 사본)이며,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2. 청원제출용지

- ① 「제목」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
- ② 「청원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날인」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의 청원인은 인원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성명 :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길동 (인) 외 24인(법인)

- ③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면 가능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
- ④ 의원인장은 사무처 총무과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3. 청원소개의견서

-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작성합니다.
- ② 「소개의견」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 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 4. 청원서

- ①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 전화,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 취지,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 ②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별첨의 청원인 서명날인부와 소개의원 서명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
- ③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공문서 용지의 기본규격인 에이4(A4)규격(가로210mm, 세로297mm)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